

[별표 4]

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(제15조제1항관련)

1. 대피·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의 결정기준

긴급 주민보호조치	결정기준
대 피	10mSv
소 개	50mSv
갑상선방호약품배포	100mGy
일 시 이 주	30mSv/처음 1월, 10mSv/그 다음 1월
영 구 정 착	1Sv/평생

비 고

1. 결정기준은 유효선량(인체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2. 대피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소개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.
4. 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5.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

구 분			육류·어류·곡물 (Bq/kg)	야채·과일 (Bq/kg)	물·우유 (Bq/l)	유 아 식 품 (Bq/kg)
방사성 핵 중	1군	Cs-134, Cs-137, Ru-103, Ru-106, Sr-89	2,000	1,000	200	100
	2군	I-131, Sr-90	1,000	500	100	10
	3군	U-235, U-238	100	100	20	10
	4군	Am-141, Pu-238, Pu-239, Pu-240, Pu-242	10	10	10	1
	5군	H-3			100kBq/l	